

우리나라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권수영*

신현걸**

정재연***

I. 서 론

감사인 별로 감사품질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연구가 이전부터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다. 특히 최근의 대규모 회계부정사건을 계기로 회계정보에 대한 투명성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감사위원회제도 및 집단소송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회계감사시장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감사인 별 감사품질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더욱 관심을 끌게 되었다.

과거의 연구에서는 감사인의 감사품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로 감사인의 규모, 감사인의 명성,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등을 감사품질의 대용치로 활용하여 왔다. 또한 외국에서는 감사인의 산업전문성도 감사품을 대용하는 주요 변수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감사시장의 규모가 작고 일부 대형회계법인이 감사시장을 독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별 전문감사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많아 산업전문성을 감사품질의 대용치로 활용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은 감사인이 특정산업에 특화하겠다는 의도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감사인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특정산업에 대한 감사경험을 통하여 계정과목의 오류발생의 유형과 빈도 및 감사기술이 축적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산업별 전문성을 갖출 수도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산업별 전문감사인을 과거 연구에서 주로 활용하였던 시장점유율 접근법과 개별 감사인의 산업별 점유율 접근법에 의하여 각각 분석하고, 2가지 판정방법이 서로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지를 비교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기존 연구에서 감사보수의 대용치로 총자산 또는 매출액을 이용하여 판정한 산업별 전문감사인이 실제 감사보수자료를 이용하여 판정한 산업별 전문감사인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함으로써 과거 연구에서 활용한 감사보수의 대용치가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 강원대학교 경영관광회계학부 조교수

본 연구는 실제 감사보수를 이용하여 산업별 전문감사인을 판정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화되며, 실제 감사보수를 이용한 결과가 총자산 또는 매출액을 이용한 결과와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함으로써 과거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하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감사인의 감사경험과 감사품질의 관계 및 감사인의 산업전문성과 감사품질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감사시장에서의 산업별 전문감사인을 판정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기로 한다. 끝으로 제4장에서는 연구결과 및 본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기로 한다.

II. 감사경험 및 산업전문성과 감사품질

2.1 감사인의 감사경험과 감사품질

감사경험(Audit experience)이란 직접적인 경험(예를 들어 회계감사에 직접 참여하여 오류를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간접적인 경험(예를 들어 발생가능성이 높은 오류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는 것)에 이르는 연장선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그 중간단계의 경험으로는 회계법인 내에서의 교육경험, 동료와의 비공식적인 대화 및 회계법인의 문헌자료 등이 포함된다(Butt, 1988). 감사인은 그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간에, 감사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재무제표 오류들의 발생빈도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자동적으로 축적하게 된다(Libby, 1983). Libby and Frederick(1990)은 오류발생 빈도에 대한 지식의 습득이 감사경험에 기인한다는 실증적인 결과를 제시한바 있다. 감사인은 분명히 감사 중에 경험할 수 있는 오류와 관련된 발생빈도에 대한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실제로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의 발생빈도에 대하여 감사조서에 공식적으로 요약하여 기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감사인의 오류발생빈도에 대한 지식은 오류와 관련된 감사인의 경험에 대한 신뢰성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Ashton, 1991).

감사품질은 피감사회사의 회계시스템에서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발견될 오류를 적절하게 보고할 가능성의 결합확률로 설명할 수 있다(DeAngelo, 1981). 만일 감사인의 독립성이 유지된다면 감사품질은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 즉 감사인의 능력(감사기술)에 의하여 좌우될 것이며, 이러한 감사인의 능력은 감사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Bonner and Lewis(1990)는 평균적으로 감사경험이 많은 감사인이 감사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감사인에 비해 감사능력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기업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업종별로 계정과목의 성격이 차별화될수록 일반적인 감사경험보다는 특정한 유형의 기업 또는 산업에 대한 감사경험이 감사인의 감사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보다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게 된다. Bedard and Biggs(1991)는 제조업에 대한 감사경험이 많은 감사인이 그렇지 못한 감사인에 비해 제조업체의 자료에서 오류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Johnson et al.(1991)은 산업별 감사경험이 부정적발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또한 Maletta and Wright(1996)는 산업에 따라 오류의 특성과 이를 적발하는 방법이 서로 상이하다는 점을 발견하였으며, 산업의 특성과 경향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감사인이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감사인에 비해 보다 효과적인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감사인의 산업전문성(industry specialization)이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2 감사인의 산업전문성과 감사품질

개별기업 대리인비용의 크기에 따라 차별적인 감사수요가 존재하게 되며, 대리인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개별기업이 속한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유인을 갖게 된다. 한편 감사인도 특정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여 차별적인 감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높은 감사보수를 받음과 동시에 시장점유율을 확대하여 명성을 쌓을 수 있으며, 산업전문성의 강화를 통하여 감사투입비용을 최소화하여 수익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산업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유인을 가지게 된다.

외국에서는 감사인의 산업전문성과 감사품질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O'keefe et al.(1994)은 산업별 전문감사인들이 그렇지 못한 감사인들에 비해 회계감사기준(GAAS)에 부합되는 감사를 수행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Gramling et al.(2001)은 산업별 전문감사인의 감사를 받는 피감사기업의 회계이익이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하는데 보다 정확하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Balsam et al.(2003)은 산업별 전문감사인의 감사를 받는 피감사기업은 재량적 발생액이 작고 이익반응계수(earnings response coefficients)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Krishnan(2003)은 산업별 전문감사인이 재량적발생액에 기초한 이익조정을 감소시키며, 따라서 이익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감사인의 의도에 의해 산업별 전문성을 강화한 경우든 감사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특정산업에 대한 감사경험에 의하여 지식이 축적된 경우든 산업별 전문감사인이 그렇지 못한 감사인에 비해 결과적으로 높은 감사품질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외국에서는 감사품질의 대용치로서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이 널리 이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

정문종·이재맹(1996)은 감사품질의 대용치로서 감사인의 규모, 산업점유율, 산업전문성에 대하여 논하고, 1988년부터 1993년까지 6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 감사시장에서 유효한 대용치로서 산업전문성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감사시장에서도 산업별

전문감사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단초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정문중(1997)은 고품질 감사인의 대응치로 명성가치와 산업별 전문성을 이용하여 대리인 비용과 기업의 질이 감사인 선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기업들은 기업의 질에 대한 사적 정보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신호로서 전문감사인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대리인비용도 감사인 선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나종길·최기호(2005)는 산업별 전문감사인이 보다 높은 품질의 감사를 제공하는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피감사기업들의 재량적발생액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즉 산업별 전문감사인의 피감사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보다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이 유의하게 작은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산업별 전문감사인이 기업규모에 따라 차별적인 감사품질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나종길·최기호(2004)는 산업별 전문성과 감사보수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감사시장에서는 산업별 전문감사인이 일반적으로 감사보수의 할인을 겪고 있으며, 다만 시장지배력이 있는 삼일회계법인의 경우에만 산업전문성에 따른 프리미엄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우리나라의 산업별 전문감사인 판정

3.1 산업별 전문감사인의 판정기준

Ernst & Young과 제휴를 맺고 있는 한영회계법인(구 안영회계법인)은 자사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및 산업재, 에너지·화학 및 유틸리티, 금융서비스, 소매 및 소비재, 기술·통신 및 오락, 부동산·음식숙박 및 건설, 보건위생 등 7가지 산업분야로 특성화되어 있음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나머지 대형회계법인들도 직접적으로 특정산업에 특화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회계법인 내에 산업별 전문가들이 소속되어 있음을 홍보하고 있다. 이는 회계법인들이 산업별 전문성에 대한 고객의 수요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각 회계법인들이 산업별 전문성을 홍보함으로써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삼일회계법인을 포함한 대형회계법인(소위 Big4)들이 회계감사시장을 독과점하는 상황이므로 회계법인의 산업별 전문성을 논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Ettredge et al.(2004)의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의 상위 3개 회계법인의 시장집중도가 0.55로 나타나고 있어 미국(0.43)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호주(0.70), 캐나다(0.68), 프랑스(0.72), 독일(0.67)보다는 낮은 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대형회계법인들의 시장점유율이 높다 하더라도 각 대형회계법인 간의 경쟁에 의해 산업별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유인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산업별 전문감사인의 측정 방법, 즉 시장점유율 접근법(market share approach)과 산업별 점유율 접근법(portfolio share approach)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감사시장에서의 산업별 전문감사인을 판정해 보고자 한다.

시장점유율 접근법이란 특정 산업 내에서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 시장점유율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감사인을 산업별 전문감사인으로 판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방법은 특정 산업 내에서 시장점유율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감사인은 특정 산업 내에서 가장 큰 지식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규모의 경제와 감사품질의 향상을 통한 이익을 기대하고 산업별로 전문화된 감사기술을 갖추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비록 여러 선행 연구에서 이 방법을 이용하여 왔지만 이 방법은 최소한 다음 2가지의 중대한 결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회계법인이 중요한 수익을 창출하기에는 너무 작은 산업들 내에서도 산업별 전문감사인을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대부분의 대형회계법인들이 중요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산업별 감사기술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투자하고 있는 대규모 또는 경쟁이 심화된 산업에 대해서는 산업별 전문성을 부적절하게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Neal and Riley, 2004). 즉 시장점유율에 의하여 산업별 전문감사인을 판정할 경우 규모가 작은 산업에서는 실제로 감사인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별 전문감사인으로 판정될 수 있으며, 반대로 규모가 크고 경쟁이 심한 산업 내에서는 산업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감사인도 상대적인 점유율이 낮은 경우에는 산업별 전문감사인이 아닌 것으로 판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점유율 접근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감사인의 산업별 점유율 접근법이 등장하였다. 감사인의 산업별 점유율 접근법이란 개별 감사인별로 감사서비스와 관련된 수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에 대해서 동 감사인이 해당 산업의 전문감사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비록 산업 내에서의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감사인이 산업전문 지식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동 감사인이 산업별 전문가로 판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방법은 각 감사인이 얻은 상대적인 산업별 수입에 의하여 산업별 전문감사인을 판정하기 때문에 산업별 시장규모에 의하여 산업별 전문성이 왜곡될 수 있다. 즉 감사인이 특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산업이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감사시장의 규모가 작으면 상대적인 감사수입이 작기 때문에 당해 감사인이 동 산업의 전문감사인으로 구분되지 못하는 결과를 보일 수 있다.

3.2 연구설계

3.2.1 시장점유율의 측정기준

일반적으로 시장점유율은 한 회사의 특정상품 매출액이 국가 전체의 동일상품 매출액 가

운데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된다. 따라서 회계감사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은 특정 감사인의 감사보수 수입액이 회계감사시장 전체(또는 해당 업종)의 감사보수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기업의 감사보수에 대한 정보가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감사보수에 대한 대용치로 해당 기업의 총자산(또는 총자산의 제공근) 또는 해당 기업의 매출액이 주로 이용되어 왔다(Mayhew and Wilkins 2003, Krishnan 2003, Balsam et al. 2003, Neal and Riley 2004 등).

Simunic(1980)의 연구를 필두로 감사보수와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에서 기업의 총자산이 감사보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총자산이 감사보수의 대용치로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총자산의 제공근을 감사보수의 대용치로 이용하는 것은 다소 임의적이기는 하지만 회계감사인의 전문성이 총자산에 단순하게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총자산규모에 따라 체감적으로 비례할 것이라는 사실에 기초한다. 즉, 규모가 2배가 큰 기업을 감사하면 전문성이 2배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2배 이하로 증가한다는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나종길·최기호 2005). 또한 Casterella et al.(2004)의 연구 등 기업의 매출액을 감사보수의 대용치로 이용한 선행연구도 많이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거래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 각 기업의 연도별 감사보수를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총자산 또는 매출액을 대용치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공시된 감사보수 자료를 이용하여 각 감사인의 시장점유율을 직접 계산할 수 있다.

시장점유율을 측정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피 감사회사의 개수이다. 피 감사회사의 개수를 이용하면 감사보수(또는 총자산 및 매출액)를 이용하여 시장점유율을 측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기업의 편의를 회피할 수 있다. 즉 감사보수 등을 이용하여 시장점유율을 측정할 경우 감사보수 등이 월등히 많은 1개 회사만을 감사하는 감사인이 감사보수가 적은 여러 개 기업을 감사하는 감사인을 제치고 산업별 전문감사인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피 감사회사의 자산·매출액 규모 또는 감사보수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피 감사회사에 대하여 기본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감사횟수 즉 특정감사인의 피 감사회사의 개수도 감사경험 및 산업별 전문성을 축적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장점유율 접근법과 감사인의 산업별 점유율 접근법을 각각 이용하여 매출액, 총자산, 감사보수 및 피 감사회사 개수 등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산업별 전문감사인을 판정해 보기로 한다.

3.2.2 산업별 전문감사인의 판정기준

시장점유율 접근법에서 산업별 전문감사인을 판정하는 기준으로는 ① 시장점유율 1위, ② 시장점유율 1위와 2위, ③ 시장점유율이 1위이면서 2위와 20% 이상의 격차를 보이는 경우, ④ 시장점유율 15% 이상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어떤 기준을 사용하더라도 임의성을 완

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almrose(1986)의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을 개선하여 대형회계법인(소위 Big5¹⁾)의 피 감사회사 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장점유율 20% 이상, 모든 감사인의 피 감사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장점유율 15% 이상인 경우를 산업별 전문감사인으로 판정하기로 한다.

한편 산업별 점유율 접근법에서는 Krishnan(2003)의 연구를 준용하여 각 감사인별로 Portfolio Shares가 높은 상위 3개 산업에서 해당 감사인을 산업별 전문가로 판정하는 방법과 Neal and Riley(2004)의 연구를 준용하여 “1/산업수(본 연구에서는 1/29개 산업 = 3.448%)”를 기준으로 cut-off하는 방법을 각각 적용하기로 한다.

위에서 제시한 본 연구의 산업별 전문감사인 판정기준을 요약하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산업별 전문감사인의 판정기준

구 분	판정기준	판정결과
시장점유율 접근법	모든 피감사회사 : 시장점유율 15% 이상	<표3>
	대형회계법인 피감사회사 : 시장점유율 20% 이상	<표4>
감사인의 산업별 점유율 접근법	상위 3개 산업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표5>
	'1/산업수'를 기준으로 cut-off하는 경우	<표6>

3.2.3 표본기업 및 자료입수

본 연구에서는 감사보수에 대한 자료의 입수가 가능한 공개기업(즉, 상장기업과 협회등록기업) 중 12월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총 6,914개의 연-기업 표본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장점유율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산업내의 기업 수가 적절한 수준이 되어야 하므로 다소 임의적이기는 하지만 선행연구와 같이 산업 내의 기업수가 연도별로 10개 미만(총 49개 미만²⁾)인 산업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산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최초 2자리)에 의하였다. 한편 각 기업의 매출액과 총자산에 대한 자료는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의 KIS-FAS에서 자료를 추출하였으며, 감사보수에 대한 자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이용하여 자료를 입수하였다.

- 1)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외국의 Big5 회계법인과 제휴한 국내회계법인의 변동이 있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00년 : 삼일, 삼정, 안건, 안진, 영화
2001년~2003년 : 삼일, 삼정, 안건, 안진, 영화, 하나
2004년 : 삼일, 삼정, 안건, 하나안진(2005년 1월에 안진이 하나를 흡수합병 함), 영화
- 2) 기타운송장비제조업(35000)은 연-기업의 표본수가 49개이나 총 감사보수가 8,098억원으로서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사시장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표본기업에 대한 업종별 평균총자산, 평균매출액, 평균감사보수 및 회사수를 요약한 것이 다음 <표2>이다.

<표2> 표본기업의 업종별 평균총자산, 평균매출액, 평균감사보수 및 회사수

(단위 : 백만원, 개)

업종코드	업종명	평균 총자산	평균 매출액	평균 감사보수	회사수
15	음식료품제조	369,244	336,852	64.401	290
17	섬유제품제조	128,333	83,998	38.700	167
1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제조	121,919	120,818	44.389	148
19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	70,412	77,686	36.499	76
21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제조	227,742	158,689	49.740	158
22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62,168	73,658	36.076	77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	345,697	282,616	56.680	762
25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	150,604	130,463	40.488	139
26	비금속광물제품제조	415,615	240,636	63.207	152
27	1차 금속산업	614,922	492,097	58.356	348
28	조립금속 제품제조	132,327	109,351	39.833	196
2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	87,371	74,372	35.776	477
30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제조	112,516	222,136	46.124	112
31	기타 전기기계 제조	132,850	126,248	41.602	285
32	전자부품,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	342,692	369,132	48.928	1,116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108,905	76,827	41.433	151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	692,279	830,162	61.947	311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	2,540,853	1,940,714	165.271	49
36	가구 및 기타제품제조	100,930	89,267	39.490	57
40	전기, 가스 및 증기업	6,397,900	3,134,671	97.990	55
45	종합건설업	801,758	707,077	94.919	256
51	도매 및 상품중개업	362,908	1,325,224	61.145	333
52	소매업	507,560	536,913	63.243	93
64	통신업	3,343,395	1,931,423	173.182	75
65	금융업	22,810,688	2,273,782	257.019	100
72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관련업	43,487	35,939	33.192	677
74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48,329	120,154	44.700	120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68,087	69,360	36.358	51
87	영화, 방송 및 공연산업	131,183	152,054	42.492	83

분석대상 29개 업종 중 평균 감사보수가 가장 낮은 업종은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관련업(업종코드 72)으로서 평균 감사보수가 약 33백만 원이며, 금융업(업종코드 65)의 평균 감사보수가 257백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한편 전체 시장규모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전자부품·영상 및 음향기기제조업(업종코드 32)이 회사 수 총 1,116개, 총 감사보수 약 540억원으로서 감사시장 규모가 가장 큰 산업으로 나타났다.

3.3 산업별 전문감사인의 판정결과

3.3.1 시장점유율 접근법

먼저 시장점유율 접근법에 의하여 산업별 전문감사인을 판정한 결과를 보면 다음 <표3> 및 <표4>와 같다.

시장점유율 접근법에 의한 산업별 전문감사인의 판정결과에 의하면 삼일회계법인이 총 29개 산업 중 모든 피감사회사의 감사보수를 기준으로 할 때 총 19개 산업에서 산업별 전문감사인으로 판정되었으며, 대형회계법인 피감사회사의 감사보수 기준으로는 총 23개 산업에서 산업별 전문감사인으로 판정되었다. 특히 시장점유율이 1위이면서 2위와 20%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산업도 8개(대형회계법인 피감사회사의 감사보수기준으로는 12개)나 되어 다른 모든 법인을 합한 2개(대형회계법인 피감사회사의 감사보수기준으로는 3개)보다 월등히 많았다. 이는 예상한 바와 같이 삼일회계법인이 상당수의 산업에서 감사시장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하지만 피 감사회사 개수를 기준으로 판정한 결과를 보면 모든 피감사회사를 대상으로 할 경우 삼일회계법인이 시장점유율이 1위이면서 2위와 20%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산업은 3개에 불과하며, 대형회계법인의 피 감사회사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감사보수를 기준으로 판정한 경우와 비슷한 10개 산업에서 시장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삼일회계법인이 동일 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감사보수가 많은 기업을 주로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안진회계법인은 모든 피 감사회사의 감사보수 기준으로 총 9개 산업에서 산업별 전문감사인으로 판정되었으며, 대형회계법인 피 감사회사의 감사보수 기준으로는 총 15개 산업에서 산업별 전문감사인으로 판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안진회계법인이 대형회계법인 이외의 회계법인들과 경쟁하고 있는 산업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영화회계법인은 대형회계법인 중에서 산업별 전문감사인으로 판정된 수가 4개로서(대형회계법인의 피감사회사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3개) 가장 작았으나 영화회계법인이 산업별 전문감사인으로 판정된 산업은 모두 기업 당 평균 감사보수가 높은 산업으로서 영화회계법인이 감사보수가 높은 산업에 선택하여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형회계법인 이외의 회계법인 중에는 신한회계법인과 삼덕회계법인이 각각 2개 산업과 1개 산업에서 산업별 전문감사인으로 판정되어 그 수가 작기는 하지만 산업별 전문감사인은 대형회계법인이 독차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삼덕회계법인은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업종코드 19)에서 33.37%의 시장점유율을 보이며, 2위와 20%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끝으로 총자산 또는 매출액에 의한 산업별 전문감사인은 감사보수에 의한 산업별 전문감사인과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피 감사회사 개수에 의한 산업별 전문감사인은 감사보수에 의한 산업별 전문감사인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표3> 시장점유율 접근법(모든 피감사회사)

산업	총자산 기준					매출액 기준					감사보수 기준					피감사회사수 기준											
	삼일	안건	삼정	안진	영화	non-big5	삼일	안건	삼정	안진	영화	non-big5	삼일	안건	삼정	안진	영화	non-big5	삼일	안건	삼정	안진	영화	non-big5			
65	◎			○			◎						○						○								
64		○	◎	○				◎	○				○						○								
35	●			○			●						○						○								
40			○	●	○				●				○						○								
45	◎	○	○					○					○						○								
15	●		○		○			○					○						○								
52	○		○	○				○					○						○								
26					○	신한,삼덕				○	신한,삼덕								○								
34				●					●										◎								
51	●				○		●			○																	
27	◎			○			◎			○																	
24	●						●																				
21		○	◎					○											○								
32	●						●																				
30	●					신한	●				신한																
74			●	○				●																			
18		◎																									
87	○		○	○				○		○									○								
31	●			○			●																				
33	●						●																				
25	●						●																				
28		●							●										◎								
36				○		신한				○	신한◎								○								신한
17				○		신한				○	신한								○								신한
19				○		삼덕					삼덕●																삼덕◎
75			●					●																			삼덕◎
22	●						●																				대주
29																											
72	●						◎			○																	

주) 1. 각 산업은 기업당 평균감사보수 기준으로 배열함

2. ● 점유율 1위이면서 2위와 20% 이상 차이를 보이는 경우, ◎ 점유율 1위이면서 2위와 10% 이상 20% 미만 차이를 보이는 경우

○ 기타의 산업별 전문감사인(점유율 15% 이상)

<표4> 시장점유율 접근법 (Big5 피감사회사)

산업	총자산 기준				매출액 기준				감사보수 기준				피감사회사수 기준			
	삼일	안전	삼정	영화	삼일	안전	삼정	영화	삼일	안전	삼정	영화	삼일	안전	삼정	영화
65	◎				○				○				○			
64		○	◎		○				○				○		◎	
35	●				○				○				◎			
40				○	○				○				○			○
45	◎				○				○				○			
15	●		○		○				○				○			
52	○		○		○				○				○			
26	○			○	○				○				○			○
34				○	○				○				○			
51	●				○				○				○			
27	◎				○				○				○			
24	●				○				○				○			
21	○		◎		○				○				○			
32	●				○				○				○			
30	●				○				○				○			
74			●		○				○				○			
18		●			○				○				○			
87	○		○		○				○				○			
31	●				○				○				○			
33	●				○				○				○			
25	●				○				○				○			○
28		●			○				○				○			
36	○			◎	○				○				○			
17	○		○		○				○				○			
19	○			○	○				○				○			○
75			●		○				○				○			○
22	●				○				○				○			
29					○				○				○			
72	●				○				○				○			

주) 1. 각 산업은 기업당 평균감사보수 기준으로 배열함
 2. ● 점유율 1위이면서 2위와 20% 이상 차이를 보이는 경우, ◎ 점유율 1위이면서 2위와 10% 이상 20% 미만 차이를 보이는 경우
 ○ 기타의 산업별 전문감사인(점유율 20% 이상)

3.3.2 감사인의 산업별 점유율 접근법

다음으로 감사인의 산업별 점유율 접근법에 의한 산업별 전문감사인을 판정한 결과를 보면 다음 <표5> 및 <표6>과 같다.

<표5>의 판정결과를 보면 산업별 점유율이 상위인 3개 산업을 기준으로 할 때 분석대상으로 포함된 8개 회계법인 모두가 기업 당 평균 감사보수가 상대적으로 큰 업종에서 산업별 전문감사인으로 판정되고 있다.³⁾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산업별 점유율 접근법의 한계점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각 회계법인별로 산업별 점유율을 계산할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산업에서 획득하는 감사수입이 높기 때문에 회계법인이 실제로 소규모 산업에 특화한다 하더라도 그 산업에서 산업별 전문가로 판정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업종코드 24)의 경우에는 감사보수 및 피 감사회사 개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모두에서 분석대상에 포함된 모든 회계법인이 산업별 전문감사인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의 전체 감사시장규모가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각 감사인의 산업별 점유율이 높게 나타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인의 산업별 점유율 접근법에 의하여 산업별 전문감사인을 판단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반면에 상당수의 산업에서 산업별 전문감사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어 앞서 분석한 시장점유율에 의한 산업별 전문감사인의 판정결과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6>의 판정결과를 보면 '1/산업수'를 기준으로 cut-off하는 경우에도 대형회계법인은 대부분 평균 감사보수가 높은 산업에서 전문감사인으로 분류되는 반면에 대형회계법인이 아닌 회계법인은 상대적으로 평균 감사보수가 낮은 산업에서도 전문감사인으로 판정되고 있다. 이는 대형회계법인이 감사보수가 높은 시장에서 주로 감사수입을 올리고 있는 반면에 소형회계법인은 대형회계법인과 경쟁을 피해 상대적으로 감사보수가 낮은 업종에서 감사수입을 올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감사보수를 기준으로 판정할 경우 각 회계법인이 산업별 전문감사인으로 판정되는 산업이 작게는 9개 업종(대주회계법인)에서 많게는 14개 업종(삼덕회계법인)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 방법에 의할 경우 산업별 전문감사인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다만, 삼일회계법인은 감사보수 및 피 감사회사 개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모두 평균 감사보수가 가장 낮은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관련업(업종코드 72)에서 산업별 전문감사인으로 판정되었다. 이는 주로 코스닥에 등록한지 얼마 되지 않은 벤처기업들이 삼일회계법인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5> 감사인의 산업별 점유율 점근법 (상위 3개 산업)

산업	총자산 기준						매출액 기준						감사보수 기준						피감사회사수 기준					
	삼일	안전	삼정	안전	영화	신한	삼덕	대주	삼일	안전	삼정	안전	영화	신한	삼덕	대주	삼일	안전	삼정	안전	영화	신한	삼덕	대주
65	●	●	●	●	●		●																	
64								●																
35																								
40																								
45																								
15																								
52																								
26																								
34																								
51																								
27																								
24																								
21																								
32																								
30																								
74																								
18																								
87																								
31																								
33																								
25																								
28																								
36																								
17																								
19																								
75																								
22																								
29																								
72																								

주) 1. 각 산업은 기업당 평균감사보수 기준으로 배열함
 2. ● 산업별 점유율이 상위 3개인 산업

<표6> 감사인의 산업별 점유율 접근법(평균점유율을 기준으로 cut-off할 경우)

산업	총자산 기준							매출액 기준							감사보수 기준							피감사회사수 기준						
	삼일	안전	삼정	안진	영화	신화	신한	삼덕	대주	삼일	안전	삼정	안진	영화	신화	신한	삼덕	대주	삼일	안전	삼정	안진	영화	신화	신한	삼덕	대주	
65	●	●	●	●	●	●	●	●	●	○	○	○	○	○	○	○	○	○	○	○	○	○	○	○	○	○	○	
64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52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74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87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	○	○	○	○	○	○	○	○	○	○	○	○	○	○	○	○	○	○	○	○	○	○	○	○	○	○	
75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	○	○	○	○	○	○	○	○	○	○	○	○	○	○	○	○	○	○	○	○	○	○	○	○	○	○	
72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각 산업은 기업당 평균감사보수 기준으로 배열함
 2. ● 산업별 점유율이 상위 3개인 산업
 ○ 평균점유율(3.448%)을 기준으로 cut-off할 경우 추가되는 산업

3.3.3 주요 업종의 연도별 산업전문감사인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연도별로 산업별 전문감사인의 변화가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시장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주요 업종에 대하여 연도별로 산업별 전문감사인을 각각 판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7>에 제시하였다.

<표7> 산업별/연도별 전문감사인(감사보수 기준)

(단위 : %)

업종코드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15	삼일(35.77) 영화(16.80)	삼일(34.24) 영화(24.03)	삼일(30.54) 영화(21.82)	삼일(36.20) 영화(15.83)	삼일(37.29)
24	삼일(30.68)	삼일(34.64)	삼일(33.22)	삼일(36.05)	삼일(39.16)
27	안진(28.67) 삼일(19.79) 안건(16.09)	안진(26.67) 삼일(22.18)	삼일(37.79)	삼일(31.74) 삼정(17.08)	삼일(35.45) 안진(17.19)
29	안진(15.38) 삼일(15.07)	안진(20.12)	안진(19.79) 삼일(16.39)	안진(19.15)	삼일(19.40) 안진(18.95)
31	삼일(31.72)	삼일(31.22) 안진(15.92)	삼일(24.03) 안진(19.18)	삼일(24.78)	삼일(28.40) 안진(18.90)
32	삼일(40.86)	삼일(43.53)	삼일(45.32)	삼일(45.61)	삼일(42.38)
33	삼일(28.56) 안건(25.31)	삼일(31.49) 안건(15.77)	삼일(33.72)	삼일(38.40)	삼일(32.19)
34	안진(36.86) 삼일(29.76)	안진(39.54) 삼일(24.48)	안진(45.01) 삼일(23.39)	안진(38.04) 삼일(32.18)	안진(37.24) 삼일(30.35)
35	삼일(66.38)	삼일(60.74)	삼일(57.52)	안진(34.32) 삼일(32.27)	안진(41.81) 삼일(28.01) 삼정(18.54)
40	영화(51.09)	안건(53.05)	안진(57.89)	안진(57.92)	삼정(52.00)
45	삼일(35.30) 안건(20.73)	삼일(32.74) 안건(20.26)	삼일(30.32) 안건(18.85)	삼일(28.41) 안건(21.56)	삼일(25.96) 안건(16.63)
51	삼일(25.36) 영화(19.05)	삼일(34.28) 영화(16.46)	삼일(38.68)	삼일(49.11)	삼일(49.46)
64	삼정(43.54) 안진(26.72)	삼정(50.45) 안진(25.67)	삼정(51.98) 안진(24.88)	삼정(53.59) 안진(23.77)	삼정(48.21) 안진(37.10)
65	삼일(35.39) 영화(33.94)	삼일(35.53) 영화(26.85) 안진(25.55)	삼일(30.04) 안진(29.34) 영화(27.18)	안진(31.34) 삼일(26.52) 영화(25.18)	삼정(43.42) 삼일(21.08)
72	삼일(30.18) 안건(15.59)	삼일(32.67)	삼일(36.54)	삼일(45.00)	삼일(38.84)
삼일	31.53	32.37	32.92	34.28	33.20
Big5	76.35	77.34	75.18	74.08	70.89

위 <표7>의 결과를 보면 우선 전기, 가스 및 증기업(업종코드 40)을 제외하고는 연도별로 산업별 전문감사인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로 거의 대부분의 업종

에서 삼일회계법인이 산업별 전문감사인으로 판정되고 있으며, 대형회계법인의 시장점유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반하여 삼일회계법인의 시장점유율은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이한 점은 평균 감사보수가 가장 큰 업종인 금융업(업종코드 65)에서 삼일회계법인이 2004년에 시장점유율 1위를 빼앗겼다는 것이다. 2004년에는 삼정회계법인이 이 업종에서 시장점유율 1위(점유율 43.42%)를 차지하였다.⁴⁾ 셋째로 위 업종에서는 소형회계법인이 산업별 전문감사인에 전혀 포함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감사보수가 큰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4 산업별 전문감사인 판정시 대응치의 타당성

국내외의 선행 연구에서는 감사보수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를 입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사보수에 대한 대응치로 총자산(또는 총자산의 제곱근), 매출액 등을 주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총자산 또는 매출액이 감사보수의 대응치로서 타당한가에 대한 직접적인 검증 없이 감사보수와 상관관계가 높다는 다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총자산 또는 매출액을 주로 이용하여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총자산 또는 매출액으로 측정된 산업별 전문감사인과 감사보수를 이용하여 판정한 산업별 전문감사인을 비교함으로써 감사보수 대응치들이 그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3.4.1 각 기준별 일치정도 비교

총자산기준과 매출액기준에 의한 산업별 전문감사인과 감사보수 및 피 감사회사 개수를 기준으로 한 산업별 전문감사인의 유사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2가지 절차를 수행하였다.

첫째, 각 기준에 의한 시장점유율 상위 3개 회계법인을 상호비교하기로 한다. 즉, 만일 두 기준에 의한 산업별 전문감사인이 3개 모두 일치하면 3점, 2개만 일치하면 2점, 1개만 일치하면 1점의 점수를 부여하고 각 업종별 점수를 합산하여 유사성을 판정하기로 한다.

둘째, 각 기준에 의한 시장점유율 1위인 감사인을 상호비교하기로 한다. 이 경우에는 산업별 전문감사인이 일치하면 3점, 그렇지 않으면 0점을 부여한다.

위 2가지 방법에 의한 산업별 전문감사인의 일치정도를 비교하여 요약하면 다음 <표8>과 같다.

4) 삼정회계법인은 2004년에 조흥은행과 한미은행(2003년에는 안전회계법인이 감사함)을 신규로 감사하게 됨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표8> 산업별 전문감사인 일치정도 비교

구 분		모든 피감사회사		Big5 피감사회사	
		Top3	Top1	Top3	Top1
감사보수대비	총자산기준	72점(82.7%)	81점(93.1%)	74점(85.1%)	78점(89.7%)
	매출액기준	72점(82.7%)	78점(89.7%)	77점(88.5%)	72점(82.7%)
피 감사회사 개수 대비	총자산기준	63점(72.4%)	54점(62.1%)	70점(80.4%)	60점(69.0%)
	매출액기준	60점(69.0%)	51점(58.6%)	71점(81.6%)	54점(62.1%)
감사보수대비 피감사회사수 기준		70점(80.4%)	60점(69.0%)	75점(86.2%)	63점(72.4%)

* ()안은 총점(87점 = 29개 산업 × 3점)에 대한 백분비임.

위 <표8>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감사보수기준 대비 총자산기준과 매출액기준에 의한 산업별 전문감사인은 대체로 80% 이상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피 감사회사 개수를 기준으로 한 산업별 전문감사인은 총자산기준 및 매출액기준에 의한 전문감사인과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사보수를 기준으로 한 산업별 전문감사인의 경우와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8>의 일치정도를 보면 산업별 전문감사인의 판정에 있어 총자산과 매출액을 감사보수의 대응치로 사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3.4.2 상관관계분석

위 3.4.1의 각 기준별 산업별 전문감사인의 일치정도는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할 수 없으므로 총자산·매출액·감사보수 및 피 감사회사 개수에 의하여 각각 판정한 산업별 전문감사인 간의 상관관계를 <표9>에 제시하였다. <표9>에서 패널A 좌하단은 각 산업별 시장점유율이 1위인 감사인을 산업별 전문감사인으로 판정하였을 때의 각 기준 간 Pearson상관계수를 표시하였으며, 패널A 우상단은 각 산업별 시장점유율이 1위와 2위인 감사인을 산업별 전문감사인으로 판정하였을 때의 각 기준 간 Pearson상관계수를 표시하였다. 또한 패널B 좌하단은 각 산업별 시장점유율이 1위이면서 2위와 점유율이 20% 이상 차이를 보이는 감사인을 산업별 전문감사인으로 판정하였을 때의 각 기준 간 Pearson상관계수를 표시하였으며, 패널A 우상단은 각 산업별 시장점유율이 15% 이상인 감사인을 산업별 전문감사인으로 판정하였을 때의 각 기준 간 Pearson상관계수를 표시하였다.

<표9> 각 기준에 의한 산업별 전문감사인의 상관관계

Panel A :				
기 준	총자산	매출액	감사보수	피 감사회사 개수
총자산	1	0.827*** (0.000)	0.367*** (0.000)	0.191*** (0.000)
매출액	0.929*** (0.000)	1	0.448*** (0.000)	0.235*** (0.000)
감사보수	0.925*** (0.000)	0.871*** (0.000)	1	0.230*** (0.000)
피 감사회사 개수	0.744*** (0.000)	0.690*** (0.000)	0.817*** (0.000)	1

Panel B :				
기 준	총자산	매출액	감사보수	피 감사회사 개수
총자산	1	0.954*** (0.000)	0.901*** (0.000)	0.741*** (0.000)
매출액	0.873*** (0.000)	1	0.878*** (0.000)	0.727*** (0.000)
감사보수	0.824*** (0.000)	0.706*** (0.000)	1	0.778*** (0.000)
피 감사회사 개수	-0.024* (0.080)	-0.023* (0.094)	-0.021 (0.129)	1

1) 각 셀의 값은 상관계수(유의수준)를 의미한다.

2) * p<0.1 ** p<0.05 *** p<0.01 양측검정

<표9>의 결과를 보면 총자산·매출액 및 감사보수에 의한 산업별 전문감사인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피 감사회사 개수에 의한 산업별 전문감사인도 시장점유율이 1위이면서 2위와 점유율이 20% 이상 차이를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자산·매출액 및 감사보수에 의한 산업별 전문감사인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시장점유율이 1위이면서 2위와 점유율이 20% 이상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는 피 감사회사 개수를 기준으로 한 경우와 다른 기준에 의한 경우의 산업별 전문감사인이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피 감사회사 개수를 기준으로 판정할 경우 영화·방송 및 공연산업(업종코드 87)을 제외하고는 시장점유율 1위이면서 2위와 점유율이 20% 이상 차이가 나는 감사인이 존재하는 업종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상관관계분석 결과에서도 앞의 각 기준별 일치정도 비교결과와 마찬가지로 총자산과 매출액을 감사보수의 대용치로 이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IV. 결론 및 한계점

본 연구에서 시장점유율 접근법과 감사인의 산업별 점유율 접근법을 각각 이용하여 매출액, 총자산, 감사보수 및 피 감사회사 개수 등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산업별 전문감사인을 판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시장점유율 접근법에 의한 산업별 전문감사인의 판정결과에 의하면 삼일회계법인이 총 29개 산업 중 모든 피감사회사의 감사보수를 기준으로 할 때 총 19개 산업에서 산업별 전문감사인으로 판정되었으며, 대형회계법인 피감사회사의 감사보수 기준으로는 총 23개 산업에서 산업별 전문감사인으로 판정되었다. 특히 시장점유율이 1위이면서 2위와 20%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산업도 8개(대형회계법인 피감사회사의 감사보수기준으로는 12개)나 되어 다른 모든 법인을 합한 2개(대형회계법인 피감사회사의 감사보수기준으로는 3개)보다 월등히 많았다. 이는 예상한 바와 같이 삼일회계법인이 상당수의 산업에서 감사시장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편 총자산 또는 매출액에 의한 산업별 전문감사인은 감사보수에 의한 산업별 전문감사인과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피 감사회사 개수에 의한 산업별 전문감사인은 감사보수에 의한 산업별 전문감사인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감사인의 산업별 점유율 접근법에 의한 산업별 전문감사인을 판정한 결과를 보면 산업별 점유율이 상위인 3개 산업을 기준으로 할 때 분석대상으로 포함된 8개 회계법인 모두가 기업 당 평균 감사보수가 상대적으로 큰 업종에서 산업별 전문감사인으로 판정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산업별점유율 접근법의 한계점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각 회계법인별로 산업별 점유율을 계산할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산업에서 획득하는 감사수입이 높기 때문에 회계법인이 실제로 소규모 산업에 특화한다 하더라도 그 산업에서 산업별 전문가로 판정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상당수의 산업에서 산업별 전문감사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어 앞서 분석한 시장점유율에 의한 산업별 전문감사인의 판정결과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1/산업수'를 기준으로 cut-off하는 경우에도 대형회계법인은 대부분 평균 감사보수가 높은 산업에서 전문감사인으로 분류되는 반면에 대형회계법인이 아닌 회계법인은 상대적으로 평균 감사보수가 낮은 산업에서도 전문감사인으로 판정되고 있다. 이는 대형회계법인이 감사보수가 높은 시장에서 주로 감사수입을 올리고 있는 반면에 소형회계법인은 대형회계법인과 경쟁을 피해 상대적으로 감사보수가 낮은 업종에서 감사수입을 올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감사보수를 기준으로 판정할 경우 각 회계법인이 산업별 전문감사인으로 판정되는 산업이 작게는 9개 업종(대주회계법인)에서 많게는 14개 업종(삼덕회계법인)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 방법에 의한 경우 산업별 전문감사인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자산기준과 매출액기준에 의한 산업별 전문감사인과 감사보수 및 피 감사회사 개수를 기준으로 한 산업별 전문감사인의 일치정도 비교 및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총자산과 매출액을 감사보수의 대용치로 이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실제 감사보수를 이용하여 산업별 전문감사인을 판정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화되며, 실제 감사보수를 이용한 결과가 총자산 또는 매출액을 이용한 결과와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함으로써 과거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산업별 전문감사인을 판정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지에 대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산업별 전문감사인이 그렇지 않은 감사인에 비해 높은 감사품질을 제공하는지 또는 피감사회사의 특성과 산업별 전문감사인의 선임유인에 대한 검증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참고문헌>

- Balsam, S., J. Krishnan, and J.S. Yang. 2003. Auditor Industry Specialization and Earnings Quality.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Vol. 22, No. 2: 71-97.
- Becker, C. L., M. L. DeFond, J. Jiambalvo, and K. R. Subramanyam. 1998. The effect of audit quality on earnings management.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Spring)*: 1-24.
- Bonner, S., and B.Lewis. 1990. Determinant of audit expertis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28)* : 1-28.
- Casterella, J., J. Francis, B. Lewis and P. Walker. 2004. Auditor Industry Specialization, Client Bargaining Power, and Audit Pricing.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Vol. 23, No. 1: 123-140.
- DeAngelo, L. 1981. Auditor independence, low-balling and disclosure regulation.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 113-127.
- Dechow, P., R. Sloan and A. Sweeney. 1995. Detecting earnings management. *The Accounting Review 70*: 193-225.
- Dechow, P., R. Sloan and A. Sweeney. 1996. The cause and consequences of earnings management: An analysis of firms subject to enforcement action by the SEC.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3*: 1-35.
- DeFond, M. 1992. The association between changes in client firm agency costs and auditor switching.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11 (Spring)*: 16-31.
- Ettredge, M., Kwon, S and Lim, C. 2004. Industry Expertise in the global economy : Empirical evidence for the big five auditors. *Working paper*.
- Francis, J. 1984. The effect of audit firm size on audit prices: A study of the Australian market.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6(August)*: 133-151.
- Francis, J. and D. Simon. 1987. A test of audit pricing in the small-client segment of the U.S. audit market. *The Accounting Review 25 (January)*: 145-157.
- Krishnan, G. V. 2003. Audit quality and the pricing of discretionary accruals.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March)*: 109-126.
- Kwon, S. 1996. The Impact of competition within the client's industry specialization on the auditor selection decision.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Spring)*: 53-70.
- Mayhew, B., and M. S. Wilkins. 2003. Audit Firm Industry Specialization as a Differentiation Strategy: Evidence from Fees Charged to Firms Going Public.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Vol.22, No.2 : 33-52.
- Palmrose, Z. 1986. audit fee and auditor size: Further evide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4 (Spring): 97-110.

Simunic, D. 1980. The Pricing of Audit Services: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Spring): 161-190.*

Teoh, S. H. and T. J. Wong. 1993. Perceived auditor quality and the earnings response coefficient. *The Accounting Review 68 (April): 346-366.*